

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04호)

심사보고서

1998. 11. 7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0. 23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10. 27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11. 4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(안 제3조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(안 제5조)
- 기금운용·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, 운용토록 조문 신설(안 제7조 내지 제9조)
-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.(안 제10조)

4. 근거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,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
- 경남도 재대본 13901-156('98.6.1)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조항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 적립한 금액은
- 답 : 97년도에 5,100만원, 98년도에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1,000만원임.

7. 토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1998. 11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